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서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-87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5..

발 의 자 : 서종수, 강희향, 김영미, 김윤정, 김효식, 문정애, 백남환, 송병길, 신종갑, 유호렬, 이필례, 전승학, 차재홍

1. 제안이유

문화, 예술, 경제,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홍보대사의 임무(안 제1조 ~ 제2조)

○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(안 제3조 ~ 제4조)

○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(안 제5조 ~ 제6조)

3. 관계법령 : 없음

4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7. 9. 15 ~ 9.19 (의견제출 없음)

나. 조례안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(이하 "홍보대사"라 한다)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
3.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
4.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
5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위촉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
2. 구의 경제적·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·내외 인사
3.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해촉)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5조(운영)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,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제6조(예우)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,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